

1. 개정이유

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,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, 무단결근,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와 같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,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징계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련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
2. 「의료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3.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수련기간의 변경) ①·② (생략)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<u>징계의 사유</u> 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.	제4조(수련기간의 변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련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. 「의료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.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